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
· 조직을 흡수·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 문화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 폐지(안 제22조의2 삭제)

- 문화전당 운영 전부 위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문화
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을 폐지

나. 문화재단에 무상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규정 등(안
제23조)

- 국가가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으로 하고,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

- 문화재단은 매 사업 연도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문화재단의 사업연도(안 제25조)

- 문화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아시아문화원 관련 조항 삭제(안 제39조, 별표)

- 아시아문화원 명칭 사용 금지 의무와 관련 과태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관련 조항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아시아문화원에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의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원”을 “문화재단”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원”을 각각 “문화재단”으로 한다.

제25조 중 “문화원”을 “문화재단”으로 한다.

제39조 중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과평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이 조에서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의 일부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기 전까지는 법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아시아문화원에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2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아시아문화원(이	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① ----- 국립

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
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직
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생략)

③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1항
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
부를 받은 문화원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대부 목적
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
우에는 그 양여·대부계약을 해
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등)

①문화원은 매 사업 연도가 종
료되기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원은 매 사업 연도의 결
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 연
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
화재단”이라 한다)의 아시아 문
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
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
유 증진---.

② (현행과 같음)

③ -----

----- 문화재단-----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등)

① 문화재단-----

-----.

② 문화재단-----

-----.

제25조(사업 연도) <u>문화원</u> 의 사업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 연도) <u>문화재단</u> ----- ----- --.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54조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54조제1항</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 단	
연 락 처	(044) 203 - 2347